



2026 년 1 월 월간 법령 뉴스레터

202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종합

제 1 부: 투자 관련 법령

1. 투자법 2025 (법률번호 43/2025/QH15 | 공포일: 2025.12.11 | 시행일: 2026.03.01, 일부 조항은 2026.01.01 부터 효력 발생)

주의사항: 투자법 2025 는 원칙적으로 202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되나, 제 51 조 제 2 항·제 3 항에 따라 아래 조항은 별도 시행일이 적용됩니다

“ 2. 제 7 조 및 부록 IV 의 조건부 투자·사업 업종 목록 → 2026 년 7 월 1 일 시행.

3. 제 50 조 제 3 항 → 202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”

제 2 부: 세금 관련 법령

1. 부가가치세법(VAT) 개정 2025 (공포일: 2025.12.11 | 시행일: 2026.01.01)

연간 매출액 5 억 동 미만 개인사업자,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

2025 년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제 1 조 제 1 항 b 목에 따라, 동 조항은 2024 년 부가가치세법 제 6 조 제 25 항을 개정하여 다음 항목들을 2026 년 01 월 01 일부터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연간 매출액이 5 억 동 이하인 개인사업자(가구 단위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 포함)가 생산·판매하는 재화 및 서비스;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조직 또는 개인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판매하는 자산; 국가비축기관이 판매하는 국가비축 물자; 수수료·요금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 및 요금.

기존 규정과 비교하면, 2024 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연간 매출액 2 억 동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습니다.

그러나 2026 년 01 월 01 일부터는 연간 총매출액이 5 억 동 이하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. 이는 기존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액의 2 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.

1. 제 5 조의 일부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보완합니다.

“1. 조직·개인이 직접 생산·어획하여 판매하는 단계 및 수입 단계에서의, 아직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통상적인 1 차 가공만 거친 재배 작물, 조림 임산물, 축산물, 양식·어획 수산물.

기업,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가 아직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통상적인 1 차 가공만 거친 재배 작물, 조림 임산물, 축산물, 양식·어획 수산물을 매입하여 다른 기업, 협동조합,

협동조합연합회에 판매하는 경우,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”

“제 5 조 일부 항목 개정·보완 내용

제 1 항 조직 또는 개인이 자체 생산·채취한 재배 작물, 조림 산물, 축산물, 양식 수산물, 어획 수산물로서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거나 일반적인 1 차 가공만 거친 것을 판매하는 경우 및 수입 단계에서의 해당 품목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입니다.

기업,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가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거나 일반적인 1 차 가공만 거친 재배 작물, 조림 산물, 축산물, 양식 수산물, 어획 수산물을 매입하여 다른 기업,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·산정·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. 단,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”

제 2 항 제 9 조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보완합니다.

"5.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, 부산물 및 스크랩(폐자재)에 대해서는 해당 불량품, 부산물 및 스크랩의 품목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."

제 3 항 제 12 조 제 3 항 및 제 15 조 제 9 항 c 목을 폐지합니다.

*실무 유의사항: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초 신고 기간은 2026 년 1 분기이며, 납부 기한은 늦어도 2026 년 04 월 30 일까지입니다. 단, 장부·전표 정리 및 세금계산서 준비는 연초부터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.

2. 특별소비세법 2025 (공포일: 2025.06.14 | 시행일: 2026.01.01)

-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

구체적으로,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재화·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:

과세 대상 재화 (완제품 기준, 조립용 부품 제외)

(1) 재화의 경우

- 담배피해예방법에 따른 담배;
- 주류·맥주피해예방법에 따른 주류(술);
- 주류·맥주피해예방법에 따른 맥주;
- 24 인승 미만 원동기 장착 차량: 승용자동차, 원동기 장착 4 륜 승용차, 픽업 승용차, 더블캡 픽업 화물차, 승객칸과 화물칸 사이에 고정 칸막이가 설계된 2 열 이상 좌석의 밴(VAN)형 화물차 포함;
- 배기량 125cm³ 초과 이륜·삼륜 오토바이;
- 비행기, 헬리콥터, 글라이더 및 요트;
- 각종 휘발유;
- 24,000 BTU 초과 90,000 BTU 이하 용량의 에어컨. 다만 제조사 설계상 자동차, 기차 차량, 비행기, 헬리콥터, 선박 등 운송수단에만 장착되는 종류는 제외.

생산 조직·개인이 판매하거나 수입 조직·개인이 실외기 또는 실내기를 부분별로 분리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, 해당 판매·수입 재화(실외기, 실내기)는 완제품(완성형 에어컨)과 동일하게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;

- 카드(화투·트럼프류);

- 제사용 지전·지물(vàng mã, hàng mã). 다만 아동 완구 및 교육용 교구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;

- 국가표준(TCVN)에 따른 당 함량 100ml 당 5g 초과 청량음료.

상기 재화는 완제품 기준이며, 해당 재화를 조립하기 위한 부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과세 대상 재화 (완제품 기준, 조립용 부품 제외)

- 담배류 (담배 피해예방법 기준)
- 주류 (주류 피해예방법 기준)
- 맥주 (주류 피해예방법 기준)
- 24 인승 미만 동력차량: 승용차, 4륜 동력 승용차, 픽업트럭(승용), 더블캡 픽업트럭(화물), 2열 이상 좌석을 갖추고 화물칸과 승객칸이 고정 칸막이로 구분된 VAN 형 화물차
-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·삼륜 오토바이
- 항공기, 헬리콥터, 글라이더, 요트
- 모든 종류의 휘발유
- 냉방 용량 24,000~90,000 BTU 에어컨 (운송수단 전용 설계 제품 제외). 실외기·실내기 분리 수입·판매 시에도 완제품과 동일하게 과세
- 화투패
- 지폐 모형·제사용 모형 종이류 (아동 완구 및 교육용품 제외)
- 국가표준(TCVN) 기준 당 함량 5g/100ml 초과 음료

(2) 서비스의 경우 다음을 포함합니다:

- 나이트클럽(디스코텍) 영업;

- 마사지, 노래방(가라오케) 영업;

- 카지노 영업; 잭팟(jackpot) 머신, 슬롯(slot) 머신 및 유사 기기를 포함한 상금형 전자오락 영업;

- 스포츠·오락 베팅 및 법령에 따른 기타 형태의 베팅을 포함한 베팅 영업;

- 골프 영업;

- 복권 영업.

과세 대상 용역

- 나이트클럽 영업
- 마사지·노래방 영업
- 카지노, 잭팟·슬롯머신 등 유료 전자오락 영업
- 스포츠·오락 등 각종 베팅 영업

- 골프장 영업
- 복권 영업

각 시기별 경제·사회 상황에 부합하도록 과세 대상의 개정·보완이 필요한 경우, 정부는 국회 상무위원회에 심의·결정을 제청하고 가장 가까운 회기에 국회에 보고합니다.

2025 년 특별소비세법은 202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며, 2008 년 특별소비세법을 대체합니다. 특별소비세법 2025 는 202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며, 기존 특별소비세법 2008 을 전면 대체합니다

3. 세무 관리법 제 108/2025/QH15 호 (2025 년) - 2026 년 적용

(공포일: 2025 년 12 월 10 일/시행일: 2026 년 07 월 01 일, 일부 조항은 2026 년 01 월 01 일부터 시행)

개인사업자에 대한 별도 규정: 제 13 조(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·산정·공제) 및 제 26 조(전자 세금계산서 사용)는 2026 년 01 월 01 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.

실무 유의사항: 2025 년 세무 관리법은 2026 년 07 월 01 일부터 시행됩니다. 다만, **아래 두 조항은 예외적으로 2026 년 01 월 01 일부터 먼저 적용됩니다:**

제 13 조: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·산정·공제에 관한 규정

제 26 조: 개인사업자의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에 관한 규정

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법 전체 시행일(2026 년 07 월 01 일)과 무관하게, 2026 년 01 월 01 일부터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 의무 및 새로운 세금 신고·산정·공제 규정을 즉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

4. 개인소득세법(PIT) 2025 (법률번호 109/2025/QH15 | 공포일: 2025.12.10 | 시행일: 2026.07.01)

개인소득세법 2025 는 납세의무자, 과세소득, 면세소득, 세금 감면 및 PIT 과세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.

개인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:

- 개인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2025 년 개인소득세법 제 3 조에 규정된 과세소득이 베트남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거주자 개인과, 동 조항에 규정된 과세소득이 베트남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 개인으로 구분됩니다.

- 거주자 개인이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.

+ 1 역년기준 또는 베트남 최초 입국일로부터 연속 12 개월을 기준으로 베트남 체류 기간이 183 일 이상인 자;

+ 베트남 내에 상시 거주지를 보유한 자. 여기에는 주민등록상 상시 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또는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계약에 따라 베트남 내에 임차 주거지를 보유한 경우가 포함됩니다.

- 비거주자 개인이란 2025 년 개인소득세법 제 2 조 제 2 항에 규정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.

아울러 2025 년 개인소득세법은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무 관리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.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다음 사항을 별도로 규정합니다.

- 거주자 개인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(급여·임금)에 대한 연간 과세기간 적용 기준
- 거주자 개인 및 비거주자 개인의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 발생 건별 과세기간 적용 기준
- 과세소득의 귀속 시점 판단 기준
- 세금 확정 신고 절차
- 기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거나 납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환급 처리 절차
- 2025 년 세무 관리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납세자 대리 원천징수, 대리 신고 및 대리 납부에 관한 책임 사항

제 9 조. 누진세율표 — 7 단계에서 5 단계로 축소

세율 구간	연간 과세표준 (백만 동)	월 과세표준 (백만 동)	세율 (%)
1	120 이하	10 이하	5
2	120 초과 ~ 360 이하	10 초과 ~ 30 이하	10
3	360 초과 ~ 720 이하	30 초과 ~ 60 이하	20
4	720 초과 ~ 1,200 이하	60 초과 ~ 100 이하	30
5	1,200 초과	100 초과	35

제 10 조. 인적공제

1. 인적공제는 거주자 납세자의 급여·임금 소득에 대한 PIT 계산 전,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.

a) 본인 공제: 월 1,550 만 동 (연 1 억 8,600 만 동);

b) 부양가족 1 인당 공제: 월 620 만 동;

유의사항: 개인소득세법 2025 는 202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나, 거주자의 사업소득·급여·임금 소득 관련 조항은 2026 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.

5.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 110/2025/UBTVQH15 — 인적공제 금액 조정 (공포일: 2025.10.17 | 시행일: 2026.01.01)

2026 년부터 가족공제액을 월 1,550 만 동으로 공식 인상.

2026 년부터 인적공제 본인 공제액 월 1,550 만 동으로 공식 상향.

이에 따라, 결의 제 110/2025/UBTVQH15 호는 2007 년 개인소득세법 제 19 조 제 1 항에 규정된 가족공제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:

결의 제 110/2025/UBTVQH15 호는 2007 년 개인소득세법 제 1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인적공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:

- 본인 공제액: 월 1,550 만 동 (연간 1 억 8,600 만 동)
- 부양가족 1 인당 공제액: 월 620 만 동

현행 결의 제 954/2020/UBTVQH14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본인 공제액: 월 1,100 만 동 (연간 1 억 3,200 만 동);
- 부양가족 1 인당 공제액: 월 440 만 동.

따라서 2026 년 과세연도분부터 납세자 본인 인적공제액은 월 1,550 만 동으로, 부양가족 1 인당 공제액은 월 620 만 동으로 공식 상향 적용됩니다.

실무 유의사항:

- 인적공제는 거주자 개인인 납세자의 근로소득(급여·임금)에 대한 세금 산정 전,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.
-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한 명의 납세자에게만 1 회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산정합니다.

부양가족이란 납세자가 부양 의무를 지는 자로서 다음을 포함합니다.

- + 미성년 자녀, 장애가 있거나 근로 능력이 없는 자녀
- + 소득이 없거나 규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:

대학교·전문대학·직업학교 등에 재학 중인 성년 자녀, 근로 능력이 없는 배우자, 근로 가능 연령을 초과하였거나 근로 능력이 없는 부모, 납세자가 직접 부양하여야 하는 그 외 의탁할 곳이 없는 자.

결의 제 110/2025/UBTVQH15 호는 2026 년 01 월 01 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, 2026 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.

6. 시행령 310/2025/NĐ-CP — 세금·세금계산서 행정처벌 규정 개정 (공포일: 2025.12.02 | 시행일: 2026.01.16)

기존 시행령 125/2020/NĐ-CP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세금·세금계산서 관련 행정처벌 기준을 강화합니다. (세부 과태료 기준은 제 4 부 세금계산서 항목 참조)

7. 간이과세(정액세) 폐지 — 2026.01.01 부터

2025 년 결의 제 68-NQ/TW 호 제 2 편 제 7 호에 따르면, 중앙위원회는 개인사업자 및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대한 세무 관리 방식을 투명성과 공정성의 방향으로 개선하는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.

"소규모·영세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

— 개인사업 관련 법적 틀을 재검토하고 정비하며,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조직 관리 및 재무·회계 제도상의 격차를 최대한 축소하고 모든 편의 여건을 조성합니다. 회계, 세무, 보험 등의 제도에 대한 디지털화·투명화·간소화·이행 용이성·준수 편의성을 강화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촉진합니다.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액 과세(세금 도급) 방식은 늦어도 2026 년 내에 전면 폐지합니다."

아울러, 결의 제 198/2025/QH15 호 제 10 조 제 6 항은 새로운 제도의 적용 시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“세금·수수료·요금 지원

...

5.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공급망 참여를 위해 실시하는 인력 교육·재교육 비용은 법인세 산정 시 과세소득 계산에서 공제되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.

6. 개인사업자는 2026 년 01 월 01 일부터 정액 과세 (세금 도급)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개인사업자는 세무 관리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합니다.

7. 사업등록세 징수·납부는 2026 년 01 월 01 일부터 폐지됩니다.

8. 국가 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재발급 또는 교체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조직·개인·기업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을 면제합니다.”

위 결의들을 근거로, 2026 년 01 월 01 일부터 개인사업자는 더 이상 정액 과세 방식을 적용받지 않습니다. 세금 신고 및 납부는 세무 관리법에 따라 실제 매출액 및 관리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행하게 됩니다.

2026 년부터 정액 과세 방식이 공식 폐지되고, 데이터 및 실매출액 기반의 세무 관리 방식으로 전환됩니다. 이는 세무·회계 분야의 신규 정책 중 핵심 사항에 해당합니다.

제 3 부: 회계·감사 관련 법령

1. 시행규칙 99/2025/TT-BTC — 기업 회계제도 지침 (공포일: 2025.10.27 | 시행일: 2026.01.01)

재무부 장관이 2026 년부터 적용되는 기업 회계제도 지침을 공포했습니다.

제 4 조 회계상 통화 규정 주요 내용:

(1) 회계상 통화 기본 원칙: 베트남 동(기호: "đ", 국제 기호: "VND"). 주요 거래가 외화로 이루어지는 기업이 아래 (2), (3), (4)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화를 회계상 통화로 선택 가능. 해당 선택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부담합니다.

(2) 기업은 다음 요소들을 근거로 회계상 통화를 결정합니다:

- 재화·서비스 판매가격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통화로서, 통상 재화·서비스 판매가격의 표시 및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;

- 인건비, 원재료비 및 기타 생산·경영 비용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통화로서, 통상 해당 비용의 지급에 사용되는 통화.

(2) 회계상 통화 결정 기준: 재화·용역 판매가격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통화 / 인건비·원자재·기타 생산·영업비용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통화

(3) 위 (2)의 요소들을 근거로 하여도 회계상 통화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, 다음 요소들도 기업의 회계상 통화 결정 근거로 고려됩니다:

- 재무 자원 조달에 사용되는 통화(채무증권, 지분증권 등 발행 시 사용되는 통화);

- 경영활동에서 경상적으로 수취하며 축적에 사용되는 통화.

(3) (2)의 기준만으로 통화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고려 요소: 자금 조달 시 사용하는 통화 / 영업활동에서 통상적으로 수취하여 적립하는 통화

(4) 회계상 통화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거래, 사건 및 조건을 반영합니다. 회계상 통화를 결정한 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. 다만 경영·관리 활동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해당 거래, 사건 및 조건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
(4) 통화 변경 제한 원칙: 일단 결정한 이후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. 다만 경영·사업 활동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 허용.

시행규칙 99/2025/TT-BTC 는 202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며, 2026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.

시행규칙 99/2025/TT-BTC 는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.

2. 시행규칙 107/2025/TT-BTC — 사회보험기금·의료보험기금 회계 지침 (공포일: 2025.11.14 | 시행일: 2026.01.01)

시행규칙 107/2025/TT-BTC — 사회보험·건강보험기금 회계 지침 (공포일: 2025.11.14 | 시행일: 2026.01.01)

2026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는 사회보험기금, 의료보험기금 및 실업보험기금의 회계계정에 관한 신규 규정

이에 따라, 2026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는 사회보험기금, 의료보험기금, 실업보험기금의 회계계정에 관한 신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회계계정은 사회보험기관이 관리하는 사회보험기금, 의료보험기금, 실업보험기금의 수입·지출·잔여 현황, 보험기금의 투자 현황, 각종 예비기금의 적립 및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기관 상호 간의 결제를 상시적·연속적·체계적으로 반영합니다.

- 회계계정 체계의 분류 및 사용 원칙

+ 재무상태표 내 계정은 제 1 류부터 제 9 류까지의 계정으로, 복식부기(계정 간 대응 분개)로 회계처리합니다.

+ 재무상태표 외 계정은 제 0 류 계정으로, 단식부기(계정 간 대응 분개 없음)로 회계처리합니다.

+ 시행규칙 107/2025/TT-BTC 에 첨부된 부록 I 의 회계계정 체계 목록을 근거로, 사회보험기관은 사회보험기금·의료보험기금·실업보험기금의 재무 체계 및 부여된 기능·임무에 따른 활동에 부합하도록 자체 적용할 회계계정을 선택합니다.

+ 사회보험기관은 자체 관리 요구에 부합하는 세부 회계처리를 위해, 시행규칙 107/2025/TT-BTC 에 첨부된 부록 I 의 회계계정 체계 목록에 규정된 계정에 대하여 세부 계정을 추가할 수 있으며, 규정에 따라 각 보험기금 및 사회보험기금의 구성 기금별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관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.

+ 시행규칙 107/2025/TT-BTC 에 첨부된 부록 I 의 회계계정 체계 목록에 규정된 계정과 동일한 위계의 계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사회보험기관은 계정 사용 및 재무제표상 정보 표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재무제표 정보의 누락 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 년 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.

- 회계계정 체계 목록, 계정의 내용·구조 설명 및 회계처리 방법은 시행규칙 107/2025/TT-BTC 에 첨부된 부록 I “회계계정 체계 및 회계처리 지침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
제 4 부: 세금계산서·증빙 관련 법령

제 4 부: 세금계산서·증빙서류 관련 법령

1. 시행령 310/2025/ND-CP — 세금계산서·세금 행정처벌 규정 개정 (공포일: 2025.12.02 | 시행일: 2026.01.16)

2026 년 1 월 16 일부터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.

이에 따라,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:

2026 년 1 월 16 일부터 세금계산서(e-Invoice) 미발행 과태료 기준

(1) 다음의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:

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.

판촉·광고·견본용 재화·서비스; 증여·기증·교환·근로자 임금 대체 지급·내부 소비용 재화·서비스(생산 과정을 계속하기 위한 내부 이동 재화 제외); 대여·차용 또는 재화 반환 형태의 출고 — 세금계산서 1 매;

(1)경고 처분

아래 거래에 대해 1 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:

판촉·광고·샘플용 재화·용역, 증여·교환·현물급여·사내 소비 목적 재화·용역 (생산공정 내 사내 이동 제외), 대여·차용·반환 형태의 재화 출고

(2) 다음의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에 대해 100 만 동 이상 200 만 동 이하의 벌금:

판촉·광고·건본용 재화·서비스; 증여·기증·교환·근로자 임금 대체 지급·내부 소비용 재화·서비스(생산 과정을 계속하기 위한 내부 이동 재화 제외); 대여·차용 또는 재화 반환 형태의 출고 — 세금계산서 2 매 이상 10 매 미만, 그리고 규정에 따른 재화 판매·서비스 제공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— 1 매;

(3) 과태료 200 만 동 ~ 1,000 만 동

아래 거래에 대해 10 건 이상 ~ 50 건 미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:

판촉·광고·샘플용 재화·용역, 증여·교환·현물급여·사내 소비 목적 재화·용역 (생산공정 내 사내 이동 제외), 대여·차용·반환 형태의 재화 출고

또는 일반 재화 판매·용역 제공 시 2 건 이상 ~ 10 건 미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

(3) 다음의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에 대해 200 만 동 이상 1,000 만 동 이하의 벌금:

판촉·광고·건본용 재화·서비스; 증여·기증·교환·근로자 임금 대체 지급·내부 소비용 재화·서비스(생산 과정을 계속하기 위한 내부 이동 재화 제외); 대여·차용 또는 재화 반환 형태의 출고 — 세금계산서 10 매 이상 50 매 미만, 그리고 규정에 따른 재화 판매·서비스 제공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— 2 매 이상 10 매 미만;

(3) 과태료 200 만 동 ~ 1,000 만 동

아래 거래에 대해 10 건 이상 ~ 50 건 미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:

판촉·광고·샘플용 재화·용역, 증여·교환·현물급여·사내 소비 목적 재화·용역 (생산공정 내 사내 이동 제외), 대여·차용·반환 형태의 재화 출고

또는 일반 재화 판매·용역 제공 시 2 건 이상 ~ 10 건 미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

(4) 다음의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에 대해 1,000 만 동 이상 3,000 만 동 이하의 벌금:

판촉·광고·건본용 재화·서비스; 증여·기증·교환·근로자 임금 대체 지급·내부 소비용 재화·서비스(생산 과정을 계속하기 위한 내부 이동 재화 제외); 대여·차용 또는 재화 반환 형태의 출고 — 세금계산서 50 매 이상 100 매 미만, 그리고 규정에 따른 재화 판매·서비스 제공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— 10 매 이상 20 매 미만;

(4) 과태료 1,000 만 동 ~ 3,000 만 동

아래 거래에 대해 50 건 이상 ~ 100 건 미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:

판촉·광고·샘플용 재화·용역, 증여·교환·현물급여·사내 소비 목적 재화·용역 (생산공정 내 사내 이동 제외), 대여·차용·반환 형태의 재화 출고

또는 일반 재화 판매·용역 제공 시 10 건 이상 ~ 20 건 미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

(5) 다음의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 행위에 대해 3,000 만 동 이상 5,000 만 동 이하의 벌금:

판촉·광고·견본용 재화·서비스; 증여·기증·교환·근로자 임금 대체 지급·내부 소비용 재화·서비스(생산 과정을 계속하기 위한 내부 이동 재화 제외); 대여·차용 또는 재화 반환 형태의 출고 — 세금계산서 100 매 이상, 그리고 규정에 따른 재화 판매·서비스 제공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— 20 매 이상 50 매 미만;

(5) 과태료 3,000 만 동 ~ 5,000 만 동

아래 거래에 대해 100 건 이상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:

판촉·광고·샘플용 재화·용역, 증여·교환·현물급여·사내 소비 목적 재화·용역 (생산공정 내 사내 이동 제외), 대여·차용·반환 형태의 재화 출고

또는 일반 재화 판매·용역 제공 시 20 건 이상 ~ 50 건 미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

(6) 규정에 따른 재화 판매·서비스 제공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50 매 이상인 경우 6,000 만 동 이상 8,000 만 동 이하의 벌금.

(6) 과태료 6,000 만 동 ~ 8,000 만 동

일반 재화 판매·용역 제공 시 50 건 이상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

시행령 310/2025/NĐ-CP 는 2026 년 1 월 16 일부터 시행됩니다.

시행령 310/2025/NĐ-CP 는 2026 년 1 월 16 일부터 시행됩니다.

제 5 부: 노동·임금 관련 법령

1. 시행령 제 337/2025/NĐ-CP 호 — 전자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정부 시행령 (공포일: 2025 년 12 월 24 일 / 시행일: 2026 년 01 월 01 일)

2026 년부터 전자 근로계약,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 인정

전자 근로계약이란 노동 관련 법률 및 전자 거래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 메시지 형태로 체결·작성된 근로계약으로서, 서면 근로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

전자 근로계약의 체결은 eContract(전자계약 플랫폼)을 통해 이루어지며,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:

- 전자 거래 관련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 소프트웨어 및 전자서명 검증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고객 정보 및 전자 근로계약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갖추어야 하며, 장애 발생 시 전자계약 인증 기능의 유지 및 복구를 보장하는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.
- 전자 증빙의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저장 방안을 갖추어야 하며, eContract 에서 체결된 전자 근로계약의 조회 기능을 보장하여야 합니다.

- 전자 신원확인 및 인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 및 사용자의 신원을 정확히 식별하고 본인 인증을 수행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신원이 확인된 조직 또는 개인이 근로계약 내용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기술적 조치를 갖추어야 합니다.
- 전자 근로계약을 ID 부여를 위해 전자 근로계약 플랫폼으로 전송하기 전에, 전자 거래 관련 법률에 따른 전자 근로계약 인증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전자 거래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자 근로계약과 서면 근로계약 간 형태 전환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전자 거래법 제 46 조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는 전자 거래 계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내무부가 규정하는 프로토콜 및 형식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채용 현황 보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전자 근로계약 거래 관리를 위한 정기 또는 수시 집계·통계·보고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내무부의 규정에 따라 표준 API 를 통해 전자 근로계약 플랫폼과 연동되어야 합니다.
- 네트워크 정보 보안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정보 보안 기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
주의:

본 뉴스레터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. 실제 적용 여부 및 절차·서식 관련 사항은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전문 법률·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연락처		
지역	주소	연락처
호치민시 (1)	835A Binh Duong 대로, Chanh Hiep 구	(0274) 3856-219 / info@trithucviet.com.vn
호치민시 (2)	9 Phan Ke Binh 로 3 층, Tan Dinh 구	(028) 3911-8830 / hcm@trithucviet.com.vn
하노이	Tho Thap 2 번 골목 15 번지, Cau Giay 구	hanoi@trithucviet.com.vn
카인 화	220 Truong Chinh 로, Ninh Chu 구	0918-757-239
자 라이	123D Tran Hung Dao 로, Quy Nhon 구	0935-003-125

